

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건 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, 관할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5조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최 기 도)